

약 사 위 원 회 규 정

제정: 1996. 4. 12.

2차 개정: 2018. 4. 9.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(이하“병원”이라 한다.) 약사의 적정을 기하고 약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약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절한 수급 및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위원장·위원은 교원 및 직원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18.04.09.)

② 위원은 약간명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.

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한다.

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3조 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 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약품의 통제 및 소비에 관한 사항
2. 재고약품 소비에 관한 사항
3. 약품사용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적절한 교육수립에 관한 사항
4. 약품의 품질 및 효율성, 부작용등에 관한 사항
5. 구입약품의 선정 및 소비에 관한 사항
6. 표준처방 및 처방집 작성에 관한 사항
7. 기타 병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병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.

제6조 (보고)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병원장에게 보고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4 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8년 6 월 8 일부터 시행한다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4 월 9 일부터 시행한다